

# 2023학년도 학생생활교육계획

2023. 1.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 목 차 】

## I. 2023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기본 방향

- 1. 학생생활교육 목표 ..... 1
- 2. 학생생활교육 추진 방향 ..... 1

## II. 중점 추진 과제

### 【중점1】 소통과 공감의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

- 1-1. 따뜻한 학교 문화 형성 .....7
- 1-2.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 ..... 8

### 【중점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

- 2-1.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 18
- 2-2.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화 ..... 21
- 2-3.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 22

## ■ 부 록

- 1. 2023학년도 월별 학생 생활교육 업무 추진 일정 .....27
- 2. 각종 서식 ..... 28





# 1. 2023. 학생생활교육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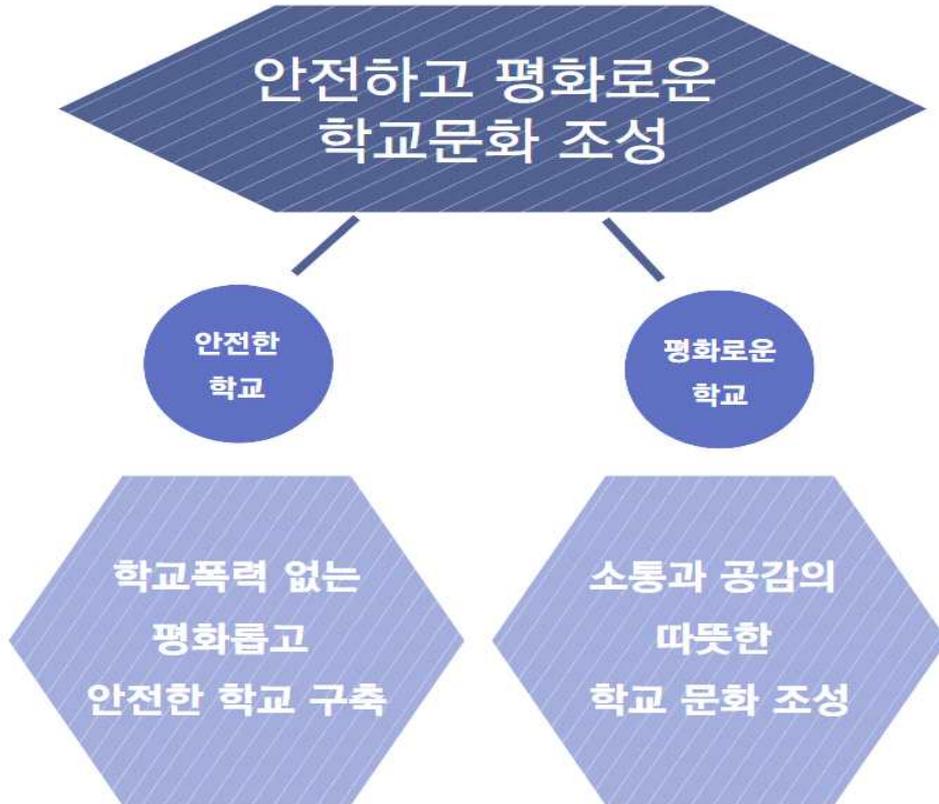






# I. 2023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기본방향

## 1. 학생생활교육 목표



## 2. 학생생활교육 추진 방향

- 차이를 존중하는 생활공동체 조성을 통한 존중과 책임의 학생생활교육 강화
- 단위학교 유형별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한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 지원
- 관계 중심 생활교육 내실화를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
- 학생의 심리는 이해하되 그릇된 행동은 규제하는 생활교육 정착
- 학생 안전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
- 관계 중심 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교사 연수 확대 및 학생 상담 역량 강화
- 관계기관과 연계한 범사회적 위기대응 체제 구축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II. 중점 추진 과제





## Ⅱ. 중점 추진 과제

정책 과제	세부 과제	세부 사업
1. 소통과 공감의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	1-1 따뜻한 학교문화 형성	1-1-1. 관계중심 학급 문화 형성
	1-2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	1-2-1. 관계 중심 생활교육 안착을 위한 연수 지원
		1-2-2. 관계 중심 생활교육 동아리 지원
		1-2-3. 책임을 다하는 생활교육 내실화
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	2-1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2-1-1.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실시
		2-1-2.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운영
		2-1-3.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내실화
	2-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	2-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
	2-3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2-3-1.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2-3-2. 학생보호인력

# 01

## 소통과 공감의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

- 1-1. 따뜻한 학교문화 형성
- 1-2.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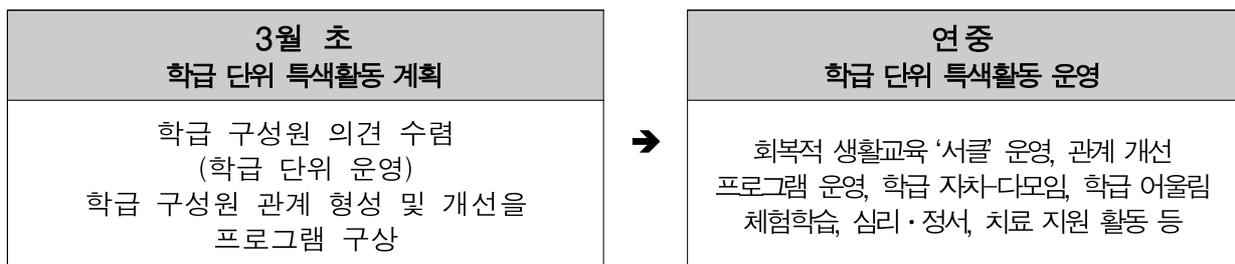
## 1-1 따뜻한 학교문화 형성

### 1-1-1 관계 중심 학급 문화 운영

#### ■ 따뜻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

○ 3월 첫 주, 새 학기에 대한 부담과 긴장을 낮추고 학생들의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계 맺기 활동을 통해 사제 간, 학생 간 상호 존중의 생활공동체 형성

- 기간: 학기 초, 연중
- 대상: 모든 학교(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교)
- 기간: 3월 및 연중
- 운영 주체: 단위 학급
- 주요 내용
  - 지역적 특성과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특색있는 학급활동 지원
  - 학급 사회성, 신체 활동 함양,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학급단위 활동 진행
  - 관계 중심의 평화로운 학급문화 조성으로 교육력 회복 기반 마련
  - 학급 단위 자율적 교육활동 운영을 통한 배려·존중 중심 학급 문화 형성
  - 모든 학생들의 심리 정서 지원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학교 공동체로 복귀 도움
  - ‘따뜻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흐름도



- 학교 특색에 맞는 학급 단위 특색 활동 운영 계획 수립 (예시)
  - [중점 가치]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형성
  - [학생 생활 적응] 학급 단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교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기타] 학급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 3월, 우정이 싹트는 교실을 위한 담임 중심 생활교육

- 기간: 3월 한 달
- 대상: 초. 중. 고 모든 학급
- 방법: 조·종례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한 생활교육
- 주요 활동 내용(예시)

- |                |                    |
|----------------|--------------------|
| ○ 함께 세우는 학급 목표 | ○ 담임이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 ○ 우리반 생활약속 만들기 | ○ 폭력 없는 교실만들기 서약식  |
| ○ 학생, 학부모 상담   | ○ 다양한 친교 활동        |

### 학생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생활교육지원단 운영

- 기간: 2023.3.1.~2024.2.29.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교사(카카오톡 채널명 - 전북생활교육)
- 방법: 학급, 학교 생활교육에 대한 1:1 맞춤형 질의응답
- 주요 활동 내용(예시)

- |               |                    |
|---------------|--------------------|
| ○ 회복적 생활교육    | ○ 학교폭력예방교육         |
| ○ 관계 중심 학급 운영 | ○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급 문화 |

## 1-2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

### 1-2-1 관계 중심 생활교육 안착을 위한 연수 지원

####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

- 대상: 전체 학교
- 시기: 연중
- 운영 방안
  - 목적: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교원 인식 제고
  - 방침: 각종 교원 연수 시 관계중심 생활교육 내용 편성 및 연수지원
    - 학교관리자 연수(학교교육과정 설명회, 교육지원청, 4월~10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교육지원청, 4월~10월)
    - 학교폭력업무담당자 연수(교육지원청, 연중)
    - 학교폭력 조정지원단 전문가 연수(교육청, 1월)

■ **관계 중심 생활교육 교사 연수**

- 대상: 신청학교 45개교
- 시기: 연중
- 운영 방안
  -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연수
  - 관계 중심 질문과 관계 중심 상담을 통한 적용
  - 갈등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서클 운영 실습
  - 관계 중심 대화모임 및 조정자 역량 강화 등
  - 갈등 전환을 위한 관계 중심 조정 전문가 및 강사 요원으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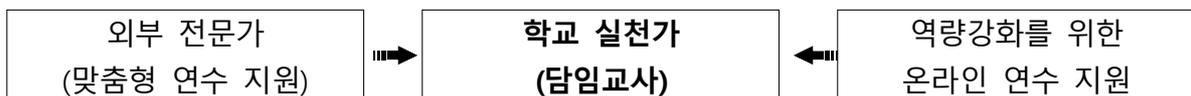
■ **단위학교 학부모 생활교육 공감 연수: 전환기 학부모 교육**

- 대상: 취학전 자녀의 학부모
- 시기: 2023.2.20.~2.24.
- 운영 방안
  - 내용
    -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부모 역할,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교육 방법의 이해
    - 학부모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자녀교육에 필요한 역량 강화
    - 가정·학교·지역사회를 묶어내는 공동체 문화 확산
    - 관계 중심 생활교육에 대한 학부모 역할 인식 및 정서 함양
  - 방법: 전주(2회), 익산(1회), 군산(1회)

**1-2-2      관계 중심 생활교육 교사 연수회 지원**

■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교사 연수회 운영**

- 목적: 학교별 동학년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토대로 학급운영을 시도하는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교사 저변 확대
- 대상: 초·중등 22팀
- 시기: 2023년 3월 ~ 12월
-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교사 연대 활성화 방안



-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한 중재 모델(회복적 서클) 중점 운영
- 단계별 교사 연수 추진: 교사 연수회 대상

## 1-2-3 책임을 다하는 생활교육 내실화

###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시행: 2023.6.28.)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시행령 개정 후 학생생활지도 방안 등 안내 예정(추후 공문 시행)

### ▣ 교육적 차원의 학생 생활 교육 및 징계

#### ●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학교 규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반드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재 량] 위원장은 교감(교감 미배치: 교무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재 량]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생활교육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 기능: 학생 생활 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단위 학교 학생 생활 교육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은 결재·보관하며, 의결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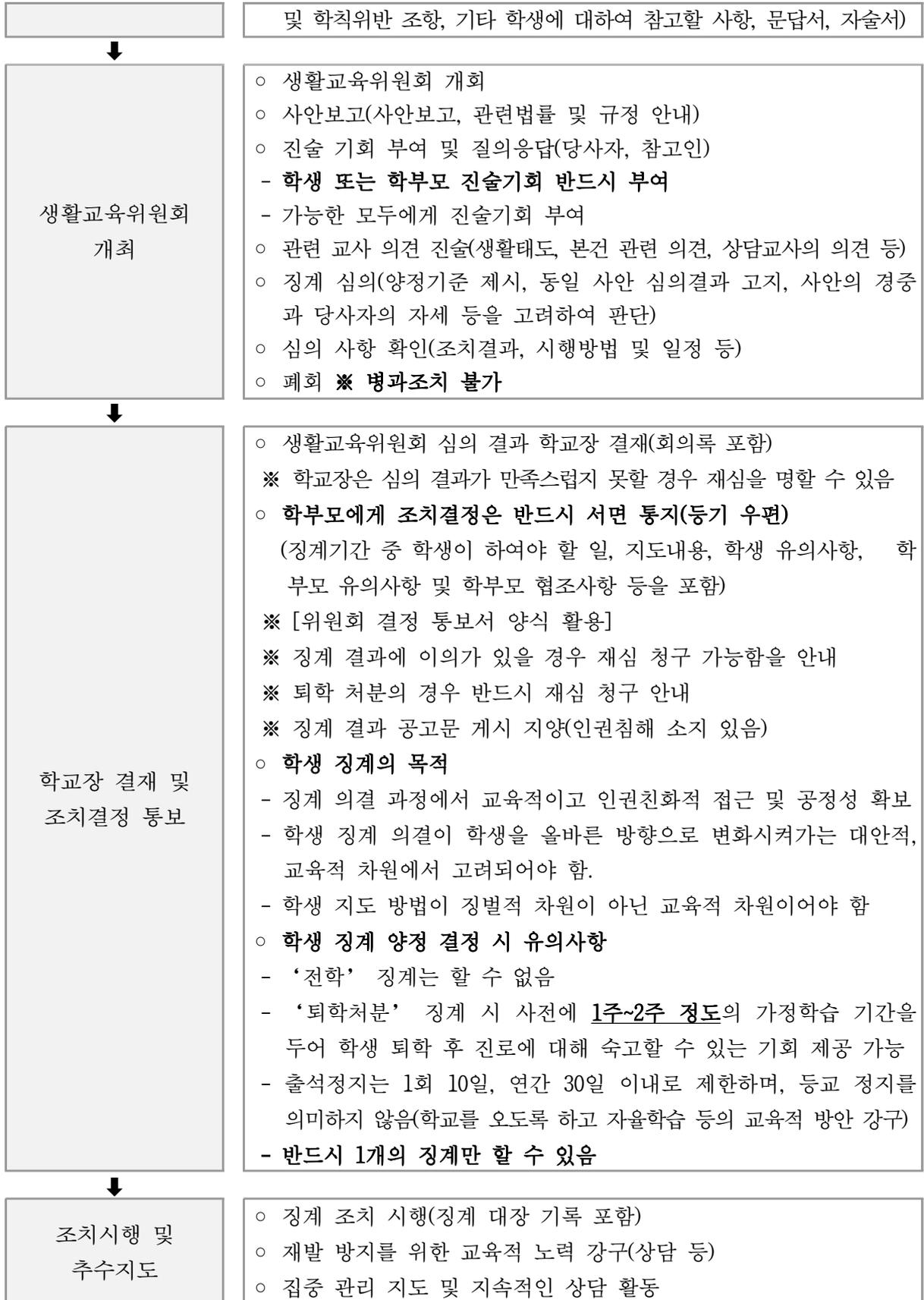
- 위원회 운영 기본 방침

- **반드시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음**
-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위원회 개최 전 사전에 알리고, 그 결과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상담을 통하여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 단위 학생징계 절차

처리 과정	과정별 주요 처리 내용				
<p>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안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교육적 구분                             <table border="1" data-bbox="549 600 1393 689"> <tr> <td>경미한 사안</td> <td>담임 교사 인계 ▶ 훈계 또는 상담</td> </tr> <tr> <td>중대 사안</td> <td>인성인권부로 인계 ▶ 위원회 회부</td> </tr> </table> </li> <li>※ <b>반드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금지)</b></li> <li>○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실 1차 통보(전화, 문자 등) ▶ 학부모</li> </ul>	경미한 사안	담임 교사 인계 ▶ 훈계 또는 상담	중대 사안	인성인권부로 인계 ▶ 위원회 회부
경미한 사안	담임 교사 인계 ▶ 훈계 또는 상담				
중대 사안	인성인권부로 인계 ▶ 위원회 회부				
<p>사안조사 및 사안 보고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학생 조사 및 객관적 증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1] 학생 사안 확인서, [서식2] 교직원 사실 확인서</li> </ul> </li> <li>○ 학생 권리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될 수 있음을 안내</li> <li>- 심의 대상일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림</li> </ul> </li> <li>○ 학생 사안 조사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압적인 조사, 회유, 시인 강요 등 금지</li> <li>- 여학생 성관련 사안 조사 시 반드시 여교사 참여</li> <li>-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 공간 가급적 피할 것</li> <li>- 여러 학생 관련 사항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조사 권장 (사안 조작 예방 및 학생 간 사생활 보호)</li> <li>- 충분히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li> </ul> </li> <li>○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사안 보고서 작성</li> </ul>				
<p>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 보고 ▶ 학교장</li> <li>○ 필요한 경우 학부모 상담을 위한 내교 통지 ▶ 학부모</li> <li>※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 일자 및 시간, 내용 등</li> </ul>				
<p>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li> </ul> </li> <li>○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노력 등 추가자료)</li> </ul>				
<p>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 ▶ 2차 통보</li> <li>※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li> <li>○ 위원장과 학교장에게 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li> <li>○ 생활교육위원회 제출용 서류 준비(개요, 비행경위와 학칙위반정도)</li> </ul>				



■ 징계에 따른 학교 단위 이의 제기 및 재심의 절차

단계	내용
재심의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규정에 따른 학생 징계: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함</li> <li>○ [학교장 재심의 요구]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li> <li>○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이의 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재심의 가능</li> <li>○ [교육적 판단]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교육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재심을 요구하여 기간 단축 등 징계 경감 가능(학생생활규정에 근거 마련 필요)</li> <li>○ 재심의 관련 단위학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 신청서 서식 제공</li> <li>- 소위원회 구성 및 재심의 신청 기간(예_3일 이내) 등 마련</li> </ul> </li> <li>○ 학생 및 보호자: 신청서에 이의 제기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여 제출</li> </ul>
단위학교 재심의 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만 재심의 함으로써 학생중심으로 접근하되 업무 효율성 제고)</li> <li>○ 소위원회: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예) 교무회의 또는 교감, 해당학년부장, 인성인권부장 3인 구성 등</li> </ul>
재심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li> </ul>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를 통해 재심의 사유 있음으로 결정되면 위원회 개최 후 재심의</li> <li>○ 학교 차원의 재심의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생·보호자 입장 최대한 고려</li> <li>- 재심의 결과는 원처분과 같거나 낮은 처분이 내려져야 함</li> <li>-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li> <li>-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징계로 개선의 기회 부여</li> <li>- 재심의 결정 시 조치(징계) 집행 유보</li> </ul> </li> </ul>
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통보 → 조치 시행</li> </ul>

● 학교폭력 외 학교생활 조치 불복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 ✓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 전학 및 퇴학 조치에 대한 불복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그 외 조치에 대한 불복 → 공립(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사립(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호 학교 내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4호 출석정지
5호 퇴학처분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법)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퇴학 조치를 내린 경우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 재심청구기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를 받은 날: 도달주의에 따라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청구
- 대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학생
- 집행정지: 재심 청구서가[서식9] 접수된 날부터 결정 통보일까지 **자동 유보**
- 담당부서: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63-239-3462)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대상: 국·공·사립학교 학생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 기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서면(①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 피청구인 ③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④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
  - 재심 신청 시 조치(징계) 집행 유보
- 제출 안내

- [청구인] 제출 자료
  - [필수] 재심청구서, 위원회 결정 통보서
  - [권장] 청구사유서, 학생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 등
- [학 교] 제출 자료
  - [필수] 위원회 회의록, 사안 조사서, 담임 또는 학생부장 의견서
- 제출 관련 기타 안내
  - 우편: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팩스: 063-220-9411
  - 문의: 063-239-3462

■ 학교 및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조치 불복

<b>국공립학교</b>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063-239-3547)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b>사립학교</b>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02

##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

- 2-1.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 2-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
- 2-3.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2-1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기본 방향

-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
- 담임·현장·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 경쟁 중심 학교문화 개선하여 따뜻한 관계 중심 학교문화 조성
- 교육력 회복 중심의 사안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 2-1-1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실시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학생)

- 주체: 학교장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 횟수: **반드시** 연 2회(학기당 1회)이상, 총 6시간 이상(사이버폭력예방교육 1시간, 도박예방교육 1시간 포함)
-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대처방안 등
- 방침: 학급단위 실시,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교육부 지침(학교폭력예방교육 11시간 권장): 안전교육(51시간)에 5차시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장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6시간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교직원 및 학부모)

- 주체: 학교장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 시기: **반드시** 연 2회(학기별 1회)이상
-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계 중심 생활교육 안내
- 방침: 학교폭력예방교육계획 수립, 학교폭력 교직원 의무연수 이수(1회 인정)

#### ▣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대상: 모든 학교, 14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시기: 3월, 수시
- 내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학생, 교직원, 학부모)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계획 게시
  - **반드시** 학교폭력예방계획 수립(학교, 교육지원청)
-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림

## 2-1-2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운영

###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극 및 역할극 운영

- 대상: 초·중 중 희망학교 400회
- 시기: 연중운영
- 주요내용
  -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극 및 역할극 운영
  - 목적: 연극, 역할극 등 체험형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
  - 지원내용
    - 역할극 운영: 초등학교(학교 단위 신청, 학급 단위 운영)
    - 연극 운영: 초·중학교 대상(6학급 내외 단위 운영)

### ■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 대상: 초·중·고 중 희망학교 471교
- 시기: 연중운영
- 주요내용
  - 학교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맞춤형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 목적: 생활지도 여건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방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1~6 선택 운영,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수업경감 대체강사 지원
  - 예시: 또래활동, 친구 사랑 동아리, 사제동행, 역할극, 솟츠 제작 등

###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 시기: 연중 6차시 중 어울림프로그램(5차시, 사이버폭력예방 1차시 포함), 도박예방 1차시
- 주요내용
  -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핵심역량 향상 프로그램
    - ※ 공감, 갈등해결, 감정조절,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 어울림, 사이버 어울림프로그램 활용
  - (방침)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활용방법 1)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mps>) 활용
  - (계정 및 비밀번호) 2023학년도 학생생활교육계획 공문 발송시 안내(전북 공통)
  - (활용방법 2)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https://doran.edunet.net>) 활용
  - (계정 및 비밀번호) 교사용 공용인 인증서 활용 가입 후 사용
  - 자료는 수업지도안과 활동지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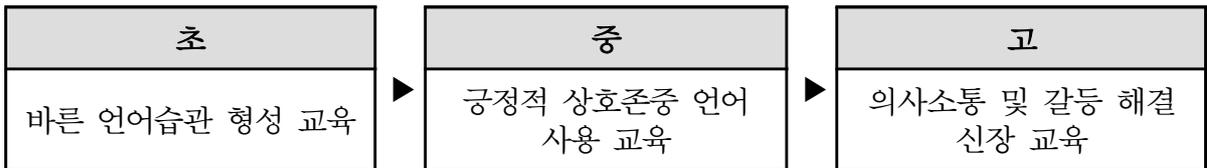
## 2-1-3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내실화

### ■ 반드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 횟수: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사이버폭력예방교육 1시간 포함
- 주요내용: 사이버폭력의 개념·실태, 유형, 대처방안 등
- 방침: 학급단위 실시,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 전북경찰청, 도청, 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인터넷드림마을, 상담복지센터 등
  - 정보 공유·협조, 프로그램 지원시스템 구축
-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자료 탑재 활용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http://www.아인세.kr>), <http://www.dorandoran.go.kr>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홍보 강화

### ■ 언어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언어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 교육
  -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명확하게 인식토록 교육
  - 학생이 욕설 사용 후에도 교사와 부모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욕설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습성을 갖게 됨을 인식
  - 욕설 금지에서 차별·편견·비난 언어 금지 등 바람직한 의사 소통·비폭력 대화 교육으로 확대



- 언어폭력 관련 생활교육(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밥상머리 교육,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행사 등
  - 언어순화를 위한 다양한 교내 행사 추진

### ■ 학교폭력 집중 지원학교 운영

- 대상: 초·중·고 20개교
- 내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력(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 경감 강사비) 지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시 컨설팅 및 프로그램, 예산 지원

## 2-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

### 추진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472호

### 2022년 청소년 여가문화 실태조사 현황(전국)

(단위: %)



### [학교] 도박예방 교육 강화

#### 반드시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

-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4학년): 담임중심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학년 초 교육자료 공문 발송)
-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교육 신청 또는 학교 자체 교육

### 전문기관 협력 체계 구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활용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예방 교육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http://www.kcgp.or.kr>)→예방홍보→예방교육→교육신청  
 예방 교육 문의: 전북센터(☎063-255-1336)
- 온라인 예방 교육 자료 안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http://www.kcgp.or.kr>)→예방홍보→예방콘텐츠→온라인예방교육콘텐츠
- 도박 문제 상담  
 온라인 상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http://www.kcgp.or.kr>)→헬프라인→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36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

#### 도박 사안 처리 및 조기 개입

##### 1. 도박 예방 교육(평상 시)

- ▶ 학생 도박 문제 예방활동 및 예방 교육 실시
- ▶ 도박문제 선별검사 실시

##### 2. 도박 문제 발생

- ▶ 학생 도박 문제 인식 및 식별
- ▶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선별

##### 3. 위기 개입 요청

-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위기 개입 요청(☎ 1336)
- ▶ 교육청 사안 보고

##### 4. 위기 개입

-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집중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상담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 5. 종결 및 재발방지

- ▶ 도박 문제(중독) 학생 지속 관리
- ▶ 재발방지를 위한 추수 지도 실시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전주)

## 2-3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 2-3-1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 ■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지원 추진 배경

- 초등학생 유괴, 납치 사건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사회적 우려 확산
-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초등학생의 안정적 등·하교 안전대책 마련
-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및 어린이 대상 범죄 사전 차단

#### ■ 2023학년도 초등학생 안심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
- 초등학생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계획 안내: 2023.1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기본계획 안내
- 초등학교별 안심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교를 대상으로 운영계획 수립
  - 학교별 통신사 선정은 학교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실시

#### ■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내용

- 운영기간: 2023. 3월 ~ 2024. 2월
- 예산지원 기준: 희망교의 총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액 배분
  - 2023학년도 194교 선정 및 운영
- 지원 대상
  - 1~3학년 중 사회배려대상자(저소득층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우선지원
  -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서비스 내용 등

구분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비고
서비스 내용	① 등·하교 문자 알림 ② 비상경보 알림 ③ 어린이안심 보험 가입 ④ 위치 전송 ⑤ 학교외 출·입 정보 알림	④,⑤항의 서비스는 통신사별 제공 유·무 다를 수 있음.
서비스 지역	○ 교문 등 주변	

## 2-3-2 학생보호인력 운영

### 2023학년도 학생보호인력 운영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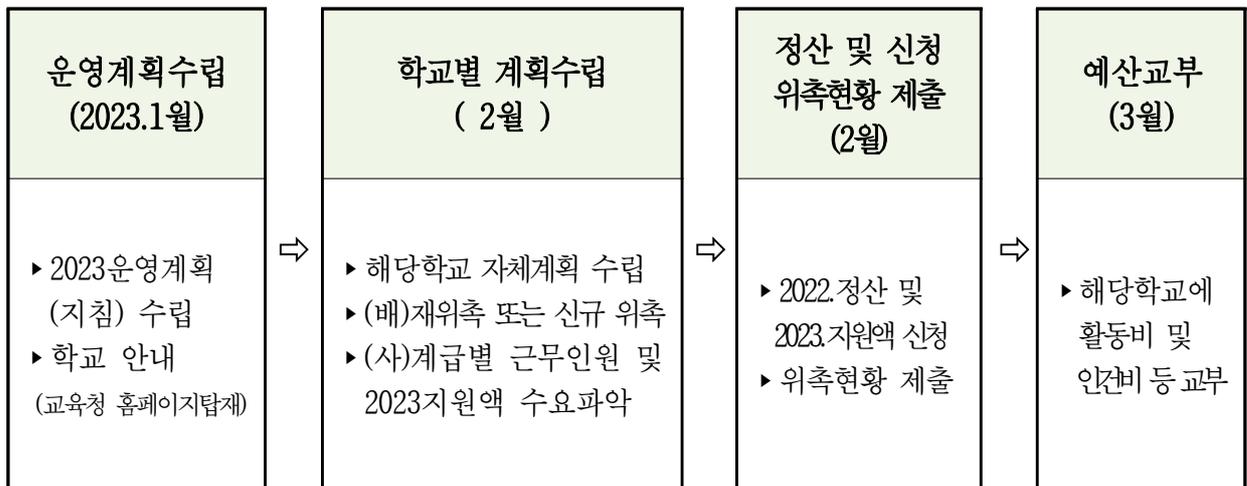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가이드라인 개정 알림(2018.11.7. 교육부)

### 2023학년도 학생보호인력 운영·지원계획 수립

#### 2023학년도 학생보호인력 운영·지원계획 안내 (탑재)

-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기본계획안내
- 전북교육청 과별홈페이지 > 민주시민교육과 > 부서자료실 > 학생생활교육

#### 추진 일정



### 학생보호인력 운영·지원 현황

#### 학생보호인력(배움터자원봉사자, 사회복지무원) 운영 목적

-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의 학생보호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2016학년도까지 운영했던 학교안전지킴이(경비인력) 대체 방안
-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에 학생보호인력 우선 배치
- 청년들의 예외 없는 병역의무(사회복무)를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이행

#### 사업 운영개요

- 대상교 : 배움터자원봉사자 250개교, 사회복지 57개교
- 기 간 : 2023. 3. ~ 2024. 2.

● **활동(근무)시간 및 지원 내역**

배움터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시간 : 1일 2~3시간, 주15시간 미만</li> <li>○ 활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가 아닌 실비 변상적 경비 (교통비 및 급식비)</li> <li>▶ 시간당 10,000원×월56시간 = 560,000원</li> <li>▶ 1인 연 6,720,000원 (560,000원×12월)</li> </ul> </li> <li>※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비활동 기간은 활동수당 미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점심시간 근무시간 미포함시 1일 9시간</li> <li>○ 인건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급별 봉급액 (병장 ~ 이등병)</li> <li>▶ 중식비 1일당 7,000원</li> <li>▶ 교통비 1일 왕복 2,000원~4,000원</li> <li>▶ 제복비 복무기간 중 1회 지원</li> <li>▶ 보상책임보험 교육청에서 단체 가입</li> </ul> </li> </ul>

● **배움터자원봉사자 공정한 선정절차 준수**

-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진 자를 배움터자원봉사자로 위촉
- 위촉 공모와 심사 시 자격, 면접 등 심사기준 운영
- 배움터자원봉사자 재위촉 횟수를 1~2회로 제한
- 예외사항
  - 해당교 정원초과로 탈락한 경우 지원자의 동의를 얻어 인근 학교 충원 가능
  - 지원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2회 초과하는 사람도 충원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절대 금지, 담당자의 활동일지 작성으로 활동비 지원
- 주요 활동 내용
  -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및 학교 내·외 순찰
  -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에 속한 역할을 부여

● **사회복무요원 운영내용**

-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 내부결재 후 사회복무요원 확인필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 주 업무내용, 부수 지원업무 등 명시)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수 임무 제한 :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 주요 활동 내용
  -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1. 2023학년도 월별 학생 생활교육 업무 추진 일정
2. 각종 서식 및 참고법령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부록 1

## 2023년 월별 생활교육 업무 추진 일정

월	사업명	대상	시기	장소	세부 내용
1월	합동교외 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연중, 방학기간	취약지역 유원지	생활지도 취약지역 합동교외생활지도
2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2월 중	교육 지원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 등
	초·중학교 입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초·중학교 입학생 학부모	2월 말	전주 군산 익산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3월	생활교육담당자 협의회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3월 초	도교육청	2023. 학생생활교육계획 안내
	학교생활교육계획 수립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포함)	초·중·고	3월 중	각 학교	2023. 학생생활교육계획 참고
	위기학생 지원 및 학교폭력(도박) 예방 학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초·중·고	3월 3주	창조 나래관	위기학생 지원 방안 및 학교폭력 예방
4월	학교폭력 예방 전담인력 연수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4월 중	예정	202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
5월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중·고	4월 중	전체 학교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7월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원 국외 연수	초·중·고 업무담당자	7~8월 중	예정	2023.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원 국외 연수
8월	여름방학 중 합동 생활지도 컨설팅	초·중·고	8월 중	교육 지원청	방학 중 합동생활지도 전반 점검 평가
9월	생활교육담당자 협의회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9월 초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 전반
	위기학생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학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초·중·고	9월 1주	창조나래관	위기학생 지원 방안 및 학교폭력 예방(도박, 사이버폭력)
10월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중·고	9월~10월	표집 학교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11월	학교폭력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1월 중	도교육청	승진가산점 제출 및 정량평가 점검
12월	수능이후 연말연시 합동 생활교육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2월 중	도교육청	수능 이후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시도평가 최종 실적 제출	초·중·고 교육지원청	12월 중	도교육청	정량평가 실적 제출
1-2월	학생중심의 내실있는 졸업문화 형성	각 학교	1-2월 중	학교	졸업식 문화 내실화 추진

## 부록 2 각종 서식

분야	서식 제목	쪽수
학생(선도)징계 관련	1. 학생 사안 확인서	29
	2. 교직원 사실 확인서	30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요청서	31
	4. 서면진술(의견서)	32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관리대장	33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결정 통보서	34, 35
	7. 이의 신청서	36
	8. 징계(전학, 퇴학) 재심 청구서	37
	9. 학생 징계 관련 중대 사안 보고(언론)	38
	10.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시나리오	39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38
공통	중대 사안 보고 형식	39
학생보호인력	※ 도교육청홈페이지/알림마당/정책자료/기본계획안내 ※ 도교육청홈페이지/민주시민교육과/부서자료실/학생생활교육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위기학생 지원		
도박 예방		
학교폭력 예방		
상담 활동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서식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요청서(예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요청서(예시)

00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년       월       일       시

2. 장소

회의장소	
대기장소	

3. 안건 :

4. 사안개요(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심의대상 사안이 수 개일 경우 모두 기재

                  년       월       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인)**

※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00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담당자(전화 :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학생 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진술(의견)서(별지 양식)을 작성하여 00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 서면 진술(의견)서

## 서면 진술(의견)서

관련 학생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생활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			
요구 사항			
기타 사항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b>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귀중</b>			



[서식 6] 위원회 결정 통보서(퇴학처분 조치 예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 통보서(퇴학처분 조치 예시)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의결하고 집행을 요청한 바,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생	학년 반 이름 :	
관련 세부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	
위원회 개최일	20○○년 ○월 ○일	
징계 조치	퇴학처분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퇴학처분 재심 안내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063-239-3462)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 제기 및 불복 절차 안내	국공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063-239-3547)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교 담당자 : ○○○, 전화 063-000-0000)

20 . . .

○○ 학교 장 (직인)

[서식 7] 위원회 결정 통보서(퇴학처분 제외 예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 통보서(퇴학처분 제외 예시)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의결하고 집행을 요청한 바,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생	학년 반 이름 :	
관련 세부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	
위원회 개최일	20○○년 ○월 ○일	
교육(징계) 조치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 제기 및 불복 절차 안내	국공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 (063-239-3547)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교 담당자 : ○○○, 전화 063-000-0000)

20 . . .

○○ 학교 장 (직인)



[서식9] 징계(전학, 퇴학) 재심 청구서

# 징계(전학, 퇴학) 재심 청구서

접 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 구 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H P					
	주소								
전(퇴)학 학생	성 명			전 소속학교	( ) 중,고등학교 ( )학년 ( )반				
피 청 구 인	전(퇴)학 조치 학교명	( ) 중, 고등학교		소재지			학교장 성명		
전(퇴)학 조치를 받은 날		년		월	일				
청구 사유									
<p>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b></p>									
<p>※ 불복절차</p> <p>-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_239-3547)</p>									

[서식 10] 학생 징계 관련 사안 보고

결 재	담 임
	전 결

## 학생 징계 관련 중대 사안 보고(언론)

전라북도○○교육지원청

○○○ 학 교 장

학교장  
직인

학교명 :	○○학교	교장	성명: ○○○ H·P: 000-0000-0000	교감	성명: ○○○ H·P: 000-0000-0000
관련 학생	(학 교) (학 년) (성 명) (성 별)				
	(학 교) (학 년) (성 명) (성 별)				
발생 일시	2023.00.00.00:00		보고 날짜	2023.00.00.	
접수 날짜	2023.00.00.				

사건장소 및 주요 내용	※ 자세하게 작성 요망
-----------------	--------------

특이사항	※ 언론 보도 및 경찰 고소 내용,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학생 여부 등
------	---

위 원 회 개최(예정)일	2023년 0월 0일 0시
------------------	----------------

조치 사항(조치 사항이 있으면 기록)

구 분	조치 사항
관련 학생	○○○ :
	○○○ :

향후 계획

학 교	○ 상담 등의 조치 지속적인 실시 등			
교육지원청	○ 관련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도 당부 등			
작성자	학교	직위 :	성명 :	전화 :
	교육지원청	직위 :	성명 :	전화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시나리오(예시)

※ [주의]

본 시나리오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진행과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회의시나리오 예시 자료입니다. 사안의 특성, 상황,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 |               |                 |                 |
|---------------|-----------------|-----------------|
| 1. 개회         | 2. 위원회 개요 안내    | 3. 제척 기피 절차의 진행 |
| 4. 담당교사 사안 보고 | 5. 관련학생 측 의견 진술 | 6. 참고인 의견 진술    |
| 7. 안전 심의      | 8. 의결           | 9. 폐회           |

○ 심의 안건

1. ○○○ 학생 절도, 흡연, 일반인 폭행, 기물 파손 등의 건

▶ 담당자

- ✓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장님께서 사전 공무로 인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 ✓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적위원 00명 중 0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교육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줘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만을 내릴 수 있습니다.**

-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의무교육대상자 제외)
-

**☞ 위원 제척, 기피 심의**

**▶ 위원장**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로 위원 제척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없으나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 ✓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있으십니까?

※ 학생의 담임교사나 본 사안으로 상담을 했던 상담교사는 가급적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주의  
 ※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위원 일동**

- ✓ 없습니다.(있는 경우는 제척, 기피된 사유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 주의사항 전달**

**▶ 위원장**

-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째, 본 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 둘째, 본 위원회 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셋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각각의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양상을 띠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상황을 이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다른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 ✓ 넷째, 본 사안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일 심의할 사안은**

1. ○○○ 학생 절도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확인서, 학칙위반내용, 학칙위반 조항 등의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련학생 진술 및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자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시안 보고**

**▶ 담당자**

- ✓ ○○ 학생 절도의 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1. 발생일시: 2000년 00월 00일(월)
- 2. 발생장소:
- 3. 사건경위:
- 4. 특이사항: 경찰신고, 언론보도 등
- 5. 과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사항 등
- ✓ ○○○학생의 절도 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 금일 사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자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쟁점 사안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질의응답 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학생 측 의견진술**

**▶ 위원장**

- ✓ 먼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과 보호자 분 맞으십니까?
- ✓ 진술을 시작하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째, 발언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둘째,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본 회의에서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본 위원회 결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본 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학생과 보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 결재 후, 서면으로 결정 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 ✓ **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 **교내 불복(공통):**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시면 학교장 재량으로 재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기간 단축 등 징계를 경감할 수 있으니 이의 제기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되며 학생과 보호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교외 불복(공립학교)**
    - 퇴학조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239-3461,3462)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조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239-3547~9)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조치결정 통보 시, 불복 절차도 서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3. **교외 불복(사립학교)**
    - 퇴학조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239-3461,3462)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조치: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조치결정 통보 시, 불복 절차도 서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 ○○○학생과 보호자님께서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 참고인 진술(탐임교사 등)**

- ※ 유의사항
  - 시안관련 사실, 교우관계, 피해정도 및 현재 상황, 학교생활, 반성정도 등을 확인
  - 의견 진술을 한 후에 즉시 퇴장, 조치 결정에 관여하는 발언 금지

▶ 위원장

- ✓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되십니까?
- ✓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 이상으로 ○○학생 관련 사안에 대한 학생, 보호자, 참고인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 ✓ 관련학생의 조치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손괴·성범죄·불법정보 유통·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협오·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
-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며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함**
- 교사의 지도 불응 행위, 모욕에 이르지 않는 욕설 등의 행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학생생활규정 등에 명시 필요)**

☞ **관련학생 조치 심의**

▶ 위원장

- ✓ 위원님들은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해당학생에게 필요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심사 숙고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전학 조치 불가**
- 위원별 조치 결정의 이유와 다수결 의결 내용 간단하게 명시
- 반드시 한 개의 조치만 가능하며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 위원1

- ✓ 본 사안은 일반인의 오토바이를 절단기를 이용해 절도한 사안으로 그 행위가 중하나 과거 전력이 없고 반성과 개전의 정이 보이므로 특별교육 10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2

- ✓ 과거 전력이 없었다고는 하나 장비를 이용한 절도는 특수절도로 죄질이 중하고 본 사안으로 경찰조사 중에 있으므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퇴학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3

- ✓ 비록 절도행위는 있었다고는 하나 가정의 환경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학생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므로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장비를 이용한 절도행위로 그 죄질은 중하지만 가정의 환경과 학생의 반성 그리고 부모의 높은 교육 의지를 고려하여 중한 조치보다는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육이수 10일 조치에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일동

- ✓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등

▶ 위원장

- ✓ 참석위원 00중 00명이 동의하여 과반이 넘었으므로 특별교육이수 10일 조치로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 ✓ 담당자께서는 본 사안의 결정 내용을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보 고 요 지

## ○○학교 관련 사안

### ■ 사안개요

- 발생일자 : 2023. 0. 00(월), 00:00 ~ 00:00
- 관련학생 : 관련(피해)학생 : 000(남, 0학년)  
                  관련(가해)학생 : 000(남, 0학년)
- 사건장소 :

### ■ 사안요지(학교조사 내용)

- 3. 2. 피해학생 000가 가해학생 000에게 0000한 이유로.....
- 
- 
- 
- 
- 3. 3. 현재 병원 입원 치료 중, 자택 치료 중

### ■ 학교 조치사항

- 3. 2. ○○○선생님과 ○○○가 병문안 부모님 면담
- 3. 4. 피해학생 심리 치료 및 상담 치료 중(000Wee)
- 3. 9.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피해학생 부모 요구사항 등

### ■ 특이사항 : ○○신문 보도( ‘학교폭력으로.....’ , 2023.3.5.)

- 
- 

### ■ 교육(지원)청 조치사항

- 3. 4. ○○지역교육청 담당자 학교 방문, 피해자 부모 상담
  -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비밀 유지 당부
  - 피·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교육적 선도 조치 확인 점검
- 3. 5. 피·가해 학생의 격리 및 접촉금지 확인

총괄: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
기획: 학생생활교육담당 장학관 오문환
연구: 장학사 한상균
장학사 김숙일
파견교사 박상기
주무관 정재욱
주무관 김민정
주무관 박시현
주무관 조연정
주무관 탁선영